BNK 부산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핵심(요약)상품설명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개별 상품의 투자설명서와 별도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제도') 하에서 포트폴리오 형태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옵션)을 지정함에 있어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되는 상품에 대한 약관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므로 <mark>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mark> 이 디폴트옵션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되는 상품의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 이 디폴트옵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5 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디폴트옵션 내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 변경이나 기지정된 상품의 위험도가 변경되어 디폴트옵션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디폴트옵션에 대하여 고객님께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9 조(설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3 항 1 호에 따라 상품의 내용과 위험, 그 밖에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분되는 특징

집합투자증권	자산운용사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하는 상품
금전신탁	고객으로부터 금전으로 수입한 신탁재산을 투자대상에 운용하였다가 수익자
	에게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 형태로 되돌려주는 상품
예금	은행과 일정한 계약을 통해 자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 (5 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개요

명	칭	부산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1 (변경전 : 부산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승인	인일	2022.12.20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mark>4 등급</mark> (부산은행 기준 저위험)	는은행 기준 저위험)			
구성	명칭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종류 O	산업은행 KDBpension 정기예금 3Y			
비중		40.0%	60.0%			
변 0.236% 보수 (기타비용 포함한 총보수, 피투자펀드 보수의 가중평균치이며, 포트폴리의 보수는 발생하지 않음.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상품별 설명서 참조)						
투자전략 정기예금에 일부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수취하는 한편, 가입자의 생애 설계에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TDF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적합 고객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을 최소화 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구성상품의 변경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산배분 비중의 조정 및 구성 상품의 변경이 필요
비중 조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폴트옵션의 위험도 및 투자 전략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 상품을 변경하거나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투자자산 및 최대손실위험(VaR)을 기준으로 산정한 6가지 펀드 위험
	등급과 예금의 위험등급을 반영하여 디폴트옵션 위험등급을 2 등급(고위험)에서
	5 등급(초저위험)까지 4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위험등급의	떠디지, 어디인 문규기문에 떠는 예상 성품의 뒤림등답에 대에 성문이 넘모아고,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
에당 뒤림등납의 의미와 유의사항	
	펀드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의해 자산운용사 또는 은행의 결정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최초 투자시점 이후에도 수시
	로 포트폴리오 내 펀드의 투자위험도를 확인하고, 투자 및 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청약철회권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주의 : 모집기간이 있는 상품은 설정일 전 영업일 17 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가
	내기시킨 및 전한모닉에 모표되는 시킨으로 전에 예상 시킨이 성과되던 뒤모기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의 기간을 말하며,
위법계약 해지권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급융오미사는 눈영소성 또는 소중의 구행 등 권디구세를 위한 녹색으로 근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자료열람 요구권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판단 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예금설명서, 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디폴트옵션은 예금과 펀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 │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대응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어 원금손실
발생 가능한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디폴트옵션을 매도할 경우 구성상품의 일부 매도는 불가하며 포트폴리오의 비율
	매도만 가능합니다. 단, 디폴트옵션 내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명세별 2회까지 인출
	가능하며 3 회째에는 전액 인출됩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상품명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종류 O 40%					
상품 1	주요 투자지역	글로벌	주요 투자대상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유형명	혼합, 재간접	위험등급	4 등급(보통위험)			
	수수료(보수)	연 0.590% (기타비용 포함)	예금자보호여부	비보호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원리금보장상품 관한 사항

	상품명	산업은행 KDBpension 정기예금 3Y 60%					
	만기	3 년	이율 적용방식	확정금리형			
	위험등급	6 등급 (매우낮은위험)	예금자보호여부	KDIC 5 천만원 보호금융상품 까지 가능			
상품 2	만기 자동재예치 여부	자동 재예치	수수료	없음			
	중도해지이율	가입일(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예금설명서 참					
	특별 중도해지 이율	신규(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 이율을 적용. 특별중도해지사유는 예금설명서 참조					
	인출가능횟수	2 회 (3 회 시 전액 인출)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mark>반드시</mark>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

■ 디폴트옵션 자동운용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 분쟁 또는 상담 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본 디폴트옵션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여러 상품을 한번에 가입하는 바구니의 개념으로, 상품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은 상품 내 담기는 구성상품에 영향을 받기에 피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디폴트옵션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성상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구성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디폴트옵션 내 구성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14 일 이후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지 않는 가입자는 스스로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펀드의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 분쟁 또는 상담 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가 발생합니다.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 총액 산출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2. 펀드를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펀드의 신규, 매입,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요?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제비용·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예금의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 분쟁 또는 상담 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정금리는 최초 가입 당시 제시한 금리에서 변동이 없으며, 변동금리는 가입 시 3 개월 회전, 6 개월 회전 등 회전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마다 시장 금리 변화에 연동하여 금리가 변하는 상품입니다.

Q2. 분할 매도가 가능한가요?

3 회에 한하여 분할매도가 가능하며 퇴직급여, 수수료 지급 등은 인출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3. 다른 계좌에서 예금을 갖고 있는데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u>다른 보호</u> 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5 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성향 및 상품위험등급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디폴트옵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위험등급	-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펀드 위험등급	매우높은	높은위험	다소높은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
	위험(1 등급)	(2 등급)	위험(3 등급)	(4 등급)	(5 등급)	위험(6 등급)
예금 위험등급						매우낮은
	-	-	-	-	-	위험(6 등급)

■ 판매회사가 정한 디폴트옵션제도 내 투자 가능한 상품의 위험등급 의미와 유의사항

디폴트옵션	펀드	위험등급의 의미				
위험등급	위험등급	투자자산 기준	수익률 변동성	97.5% VaR	유의사항	
1 등급 (초고위험)	1 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단, 최대 손실률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같은 금융투자상품	25% 초과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ر ا ا	2 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25% 이하	50% 이하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입니다.	
2 등급 (고위험)	3 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②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15% 이하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 등급 (중위험)	4 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10% 이하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 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 등급 (저위험)	5 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 ②수익구조상 원금 보존 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5% 이하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 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 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 등급 (초저위험)	6 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④국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등 채권	0.5% 이하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설정 후 3년 미만 펀드는 투자자산 기준, 설정후 3년 경과 펀드는 위험등급 재산정 시점에 따라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 또는 97.5% VaR 모형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24.03.0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펀드의 위험등급은 97.5% VaR 모형 기준으로 산정하며, 결산일 도래 전까지는 직전 기준인 수익률 변동성으로 산정합니다.)
- 판매회사는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 발행회사 신용위험, 시장상황 급변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보다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 97.5% VaR 모형 : 최대손실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3 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하여 산출

■ 포트폴리오 내 펀드 계약의 해지 및 해제(환매) 관련 사항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의해지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한 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호,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 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의무해지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 시 관련 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BNK 부산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1800-31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실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